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2. 5 선고 2022가단1048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효민, 윤정배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전유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희준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5. 체결된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96,3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6,330,000원 및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2. 23. 원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외 1필지 지상 다가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공사대금은 7억 1,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말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71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5. 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62,551,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C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단5865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1. 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96,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2022. 4. 5. 피고와 미완성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 변경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다시 피고에서 C으로 변경하기 위해 2023. 10. 11. 포항시 남구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청이 반려되었다. 피고와 C은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895호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24. 9. 20. 피고에서 C으로 건축주변경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이다. C이 2022. 4. 5.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마쳤다. 이와 같이 C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5. 체결된 이 사건 건축주명의 변경약정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을 취소하고 C 명의로 원상회복할 의사가 있었으나 관할 기관의 위법한 반려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2024. 9.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경료되어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채무자인 C에게 회복된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와 C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순향

별지